

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법률 제5,954호 1999. 3. 31.

개 정 이 유

사업자단체의 설립강제와 회원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강화하고, 매매업 이외에 대해서는 겸업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등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가.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인 사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를 감정평가법인의 대표로 둘 수 없도록 하였으나 특례규정을 두어 앞으로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를 대표로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제2항)
- 나.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업·중개업 또는 그 대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업의 본질과 상충되는 매매업만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법 제27조제4항)
- 다. 감정평가업협회의 설립을 강제하고 회원의 가입을 의무화하던 사항에 대하여 협회의 설립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가입의무를 삭제함(법 제3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 제18조제2항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구성하며”를 “구성하고”로, “있다.”를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들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 제목“(감정평가업협회)”를“(감정평가협회의 설립)”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는”으로, “감정평가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를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권한위탁)”을“(업무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에”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로 하며, 동조제2항중 “협회에 권한을”를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그 업무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감정평가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로 본다.

주택회보